

'91부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 5. 3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5.29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5.30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5.3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별첨
나. 주요골자: 별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을 본 위원회에서 예산 각 장별 분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통한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며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요하거나 긴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충분한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였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위원회만장일치	특위의 심사활동 결과를 취합한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 찬성

- 나. 반대토론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모아진 안을 위원회안으로하여 수정안 제출
나. 수정이유: 불합리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게 되었음.
다. 수정주요골자: 경찰의 지원예산중 사격장 건

립 예산은 법적근거가 문제가 되어 일부 제외시켰으며 의원 해외연수비는 의원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자진 삭감 시켰음

6. 심사결과: 예산장별 설명

7. 소수의견의 요지: 풀 보조단체 지원비는 우선 단체선정과 지원액에 대해서 몇 몇 의원들은 지역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단체속의 확대와 예산 지원액의 증대 의견을 개진하였음.
8. 기타필요한 사항: 쓰레기 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쓰레기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검토된 바 있음

9. 체제자구심사내용

- 질의, 토론, 표결이 이루어져 수정안이 확정된후 특위 위원중 2인 선정(양재오위원, 강영석위원) 하여 확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체제자구심사 완료하였음.

- 심사일시: 91.5.31(12:00-13:50)
- 심사인원: 2인
- 심사요령: 확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완전분석 실시

제 안 설 명 의 요 지

○ 제 안 이 유

(세 입 편)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내시
- 지방세 목표액 증액설정
- 소사택지지구 진입로 개설 부담금수입(주공)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부담금
- 기타 세입의 변경 및 추가발생분

(세 입 편)

- 본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
- 법적 기준 필수경비 누락 및 부족분 계상
- 인건비 추가발생분
- 용도지정 재원사업의 확보
-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각종사업비 확보

○ 주 요 골 자

(일 반 회 계)

-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중 투자사업
- 용도지정 재원사업(소사택지 진입로 개설)
- 인건비 추가발생분 계상
- 기타 법적 필수경비

(특별회계)

-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 중동지구 용지보상 및 택지조성
- 상수도 확장 및 원수구입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신설

일반회계장별예산현황

(단위: 천원)

장 별	시제출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계	26,132,115	982,424	26,122,115	
의회비	287,255	50,000	227,255	
일반행정비	3,575,928	631,710	2,944,218	
사회복지비	1,720,307	28,982	1,691,325	
산업경제비	326,619	23,000	303,619	
지역개발비	20,522,690	153,312	20,369,378	
문화예술진흥비	1,005,746	95,420	910,326	
민방위비	485,916		485,816	
지원및기타경비	-1,792,246	+982,424	-809,822	

특별회계별예산현황

(단위: 천원)

회 계 별	시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정예산액	비고
		삭감액	예비비		
계	52,013,641	141,500	+141,500	52,013,641	
상수도사업	5,218,713	50,000	+50,000	5,218,713	
공영개발사업	36,020,000	82,500	+82,500	36,020,000	
하수도사업	10,774,928	9,000	+9,000	10,774,928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1.5.

29.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1.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사유)

1. 부천시 직장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을 도모하며;

2.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산업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설치한

3.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1. 상용허가(안 제3조 각호)

2. 사 용 료(안 제3조 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제안설명자: 보건사회국장 김 동 언)

문) 노동복지회관이 운영권만 시에 있고 사실상 관리는 노동부라 하는데 답변은?

답)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국고보조 311,022천원과 시·도비 1,548,206천원등 총 1,859,228천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며 부천시의 공유재산이고 재산권자가 부천시청임.

문) 위탁관리(예식장, 식당 등), 요금선정방법, 구체적인 운영세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답) 현행, 지방제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식장은 관리인원을 충원 배치하여 직영을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구내 식당은 위탁을 할 경우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실익이 되도록, 위탁 계약시 질, 가격 등 계약 조건 등을 붙여 공개입찰 운영할 계획임.

문) 상담실의 상담역할자 임명과 대상에 대하여는?

답) 노동법등, 노사관계등의 상담은 전문적으로 노동부, 노총등에서 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은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기타 상담은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 운영 하겠음.

문) 노동복지회관 사용요금을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하였는지?

답) 사용요금을 받는 부천시 공유재산 시설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등이 있으며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요금은 시민회관의 소공연장시설을 참고하고 시중 예식장의 요금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드레스, 폐백실 이용은 무료로 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을 근로자가 사용시는 일반 시민의 50%할인 이용토록 하였음.

문) 현 사용료 정수로 노동복지회관의 유지가 가능한지?

답) 노동복지회관은 수익사업(공기업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